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비매품/무료
03360
9 791193 717004
ISBN 979-11-93717-00-4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drights.kidp.or.kr

산업통상자원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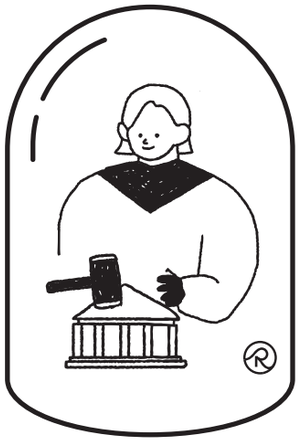

CONTENTS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법률자문단 008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010

디자인공지증명 012

디자인표준계약서 014

디자이너경력관리 015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017

계약 관련 077

디자인용역비 관련 087

회계 및 노무 관련 095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109

기타 및 특수사례 관련 119

사례 찾아보기 127

디자인권리보호사업 운영체계도

디자인 분쟁조정 절차

01 피해신고

분쟁 및 피해신고
지식재산권, 용역비, 계약, 노무, 회계 등

02 분쟁상담

전국 권역별 운영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

03 분쟁자문

분야별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04 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 및 조정안 제시

▼

개별소송(민사)

→ **조정 중단 및 불성립 시 당사자의 판단**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권리보호

01 디자인표준계약서
총 4종 멀티미디어,
시각, 제품
(일반/성과배분형)

02 디자인대가기준
디자이너
노임단가
/표준품셈

03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
경력의
체계적 관리

04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권 등록 출원 전
디자인침해
사전 예방

디자인권 등록 (특허청)
공지증명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시
심사 결과에 따름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1. 디자인법률자문단
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 디자인공지증명
4. 디자인표준계약서
5. 디자이너경력관리

01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업계 관련자

지원내용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과의 1:1 맞춤상담 서비스

신청방법 전화, 우편, 방문접수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수도권) | 1577-4964 | ko-dia@daum.net
광주디자인진흥원(호남·제주권) | 062-611-5053 | law@gdc.or.kr
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경남권) | 051-790-1038 | law@dcb.or.kr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대구·경북권) | 053-740-0034 | hide@dgdp.or.kr
대전디자인진흥원(충청권) | 042-930-7847 | alsrudgkxm@didp.or.kr
강원디자인진흥원(강원권) | 070-7791-2695 | law@gidp.kr

온라인신청
웹사이트(drights.kidp.or.kr) 내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신청서 접수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177 | drights@kidp.or.kr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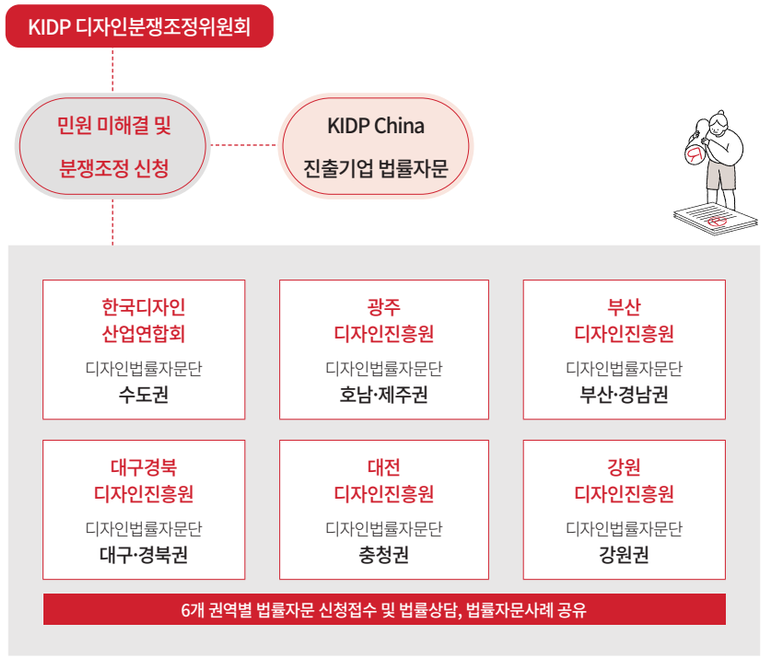

자문절차

1. 피해사례 접수
   - 디자인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 권역별 담당기관
   - 법률상담 신청(신청방법: 웹사이트(drights.kidp.or.kr), 전화, 우편)
2. 피해 유형별 DB화 및 상담연결
   - 접수내용 파악 후 피해 유형별 분류 DB화
   - 담당 자문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 연결
3. 신청서 검토 및 법률상담 진행 (자문위원 진행)
   - 신청서 검토
   - 상담 신청인과의 1:1 상담 진행(전화 상담/필요시 방문 상담 가능)
4.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 (자문위원 진행)
   - 담당 자문위원 1:1 상담 및 자문 종료 후 권역별 담당기관에 법률상담카드 제출
5. 자문의견 전달
   - 담당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0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

지원내용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

신청방법 웹사이트(drights.kidp.or.kr) 내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및 디자인법률자문단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공동 운영하는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및 권역별 디자인법률자문단 상담 과정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디자인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되고 피신청인에게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조정 안내서류 등이 함께 송부됨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177 | drights@kidp.or.kr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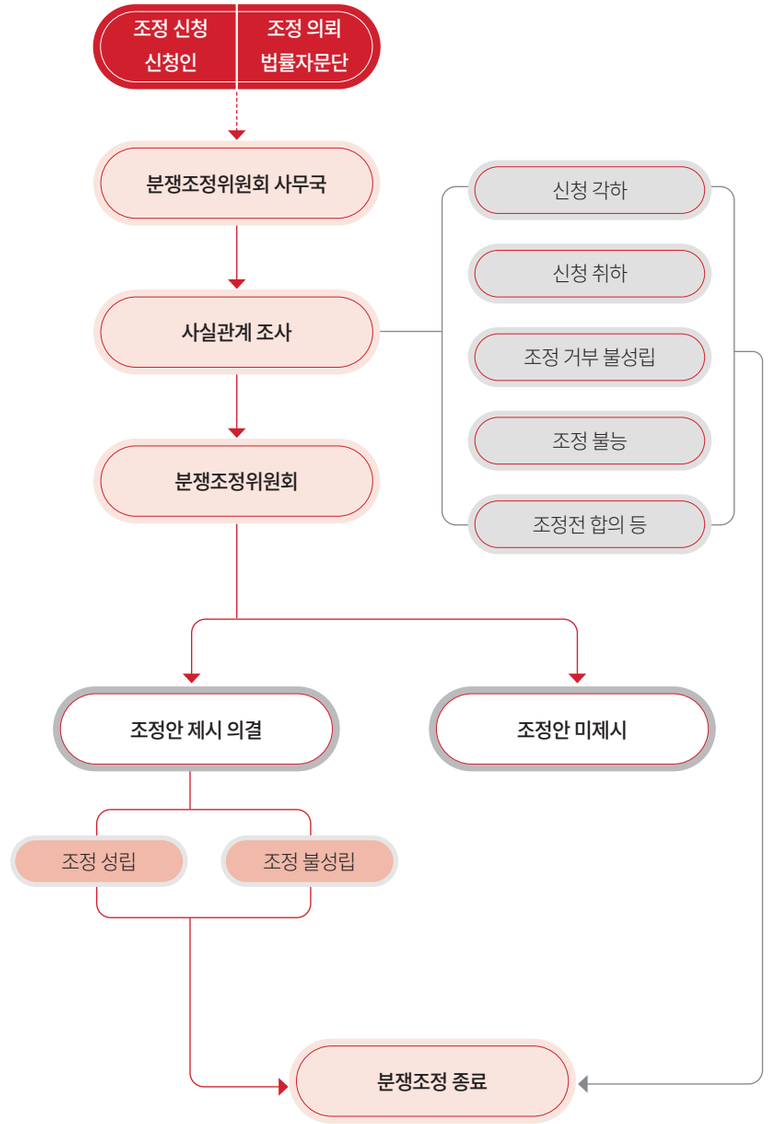

03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지증명의 장점

① 디자인출원 등록 전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여, 개발 과정 중 창작된 디자인 안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③ 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

디자인 창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공지증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의 차이점

구 분	디자인 등록	디자인공지증명
목 적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공지 사실 증명
처리기간	출원 후 6개월 내외	짧음(1~3일)
권리 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 92조)	· 독점·배타적 권리 없음 ·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신청 절차	· 출원인이 출원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온라인 제출 · 실체 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함
비 용	· 출원 비용: 94,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75,000원 · 연차등록료: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 건당 20,000원(대학생 이하 무료) * 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보호 기간	존속 기간 20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177 | drights@kidp.or.kr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절차

04
디자인표준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제품디자인(일반형, 성과배분형),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관련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중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01 평등한 계약 관계	'갑'과 '을'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 명시
02 피해예방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용역 단계별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03 계약서 4종	제품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177 | drights@kidp.or.kr

05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경력관리는 디자이너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시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경력관리 신청 절차

회원 가입 →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 → 서류 검토 → 확인 완료 → 경력 확인서 발급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이용 수수료 체계

입회비	변경 수수료	발급 수수료
건당 30,000원	건당 3,000원	1부당 3,000원
디자이너 경력관리 최초 신청 시 1회 납부	신규 신청 이후 경력 수정 및 추가 시 변경 신청에 대해 건별로 수수료 납부	신규 신청 시 1회 무료 발급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1부당 수수료 납부

문의처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designcareer.kodfa.org | 02-3445-5198 | dsncareer@hanmail.net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저작권침해 #디자인출원 #인스타툰 저작권법 #디자인 도용, 카피제품 #상표권 양도 #디자인권, 상표권, 로고디자인 #특허등록 #라이선스 계약 #상표출원 수정, 로고 변경 #유사 디자인 범위 #소재 디자인권리 #디자인표절 #유사 상표권 출원 #저작권보호 #지식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디자인권리보호 #무료이미지 #해외상표권 #해외지식재산권 #해외지재권분쟁 #지식재산권 운용전략 #저작물 #공모작의 지식재산권 출원 #상표권양도 #랜드마크 일러스트 제품 #픽셀아트, 디자인 저작권 #디자인 저작권보호 #BI 디자인, 지식재산권보호 #의견제출 통지서 #동일상표 #개량디자인 #패션디자인, 제조방법 특허 #브랜드상표권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

KEYWORD 저작권침해

01

로고 디자인을 무단 도용당하여 연락했지만, 사과도 없이 판매중지를 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상대방이 신청인의 로고 디자인 및 현판 디자인을 무단도용하여 쇼핑몰에서 판매되어 질의했지만 상대방 측은 사과조차 없이 쇼핑몰에서 내린 후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문의견

로고의 경우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나 제품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개성있게 만든 형상, 이미지 등 심벌마크, 표장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로고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창작성 있게 표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로고 디자인의 경우에도 창작성 있는 이미지 도안을 제작한 것으로 창작성 있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디자인 무단 도용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KEYWORD 디자인출원

02

디자인 도용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역
서울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주문 케이크 숍을 운영하는 케이크 디자이너로서 모든 디자인 과정을 직접 합니다. 최근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 도용당할 위험에 대비해 디자인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방법에 대해 자세한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직접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특허로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디자인등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아야 하지만, 디자인의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디자인출원을 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심사출원대상 물품은 로카르노 기준에 따라 7개로 분류되며, "케이크"는 일부심사출원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일부심사출원은 출원 후 대략 2~3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KEYWORD 인스타툰 저작권법

03

인스타툰 연재 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
서울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인스타툰 연재 중 인스타툰과 캐릭터 저작권 등록과 개인의 저작물을 침해하거나 출처 표기 없이 무단 도용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문의견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해당 등록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라는 것과 등록된 창작 연월일과 공표 연월일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원래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작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된 자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이러한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된 경우에는 창작 연월일에 대한 추정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제 제4항)

신청인이 제작한 캐릭터, 인스타툰은 미술저작물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신청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고, 게시할 권리 등을 갖습니다. 이에 누군가가 신청인의 저작물을 침해하거나 출처 표기 없이 무단 도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해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무단 도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KEYWORD 디자인 도용, 카피제품

04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제품의 카피 품목을 타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역
부산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2022년 2-3월 A사에서 툴○슬○○○○라는 자체 제작 상품이 2023년 5월 온라인 사이트에서 디자인 카피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객이 제보하여 알게 되었는데, 인터넷 판매 특성상 고객들은 외관만 보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카피제품의 외관이 스카프 세트인 점, 동일한 색상, 동일한 디자인(앞부분 셔링, 밑부분 모양) 모두 동일하여 같은 제품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피해 현황 : 자체 제작 상품인 만큼 국내 제작/공임비가 있는 편임
저가 중국산 제품을 본 많은 소비자들의 혼동
해당 제품이 자사 상품인지 알고 구매한 고객 존재
저품질 상품으로 인한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카피 업체의 안일한 대응에 업무에 지장 (정신적 피해)

자문의견

우선 판매 중인 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권리를 특허청에 신청하여 권리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권리는 제품의 형태나 모양에 관련되어 우리 회사 제품만의 특이한 부분을 보호받는 것이며,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제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도 1년 이내에 공지 예외 주장을 통한 자진신고 과정을 거치면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사에서 판매 중인 OOO 제품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된 이후 카피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타사의 카피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상황은 판매 중인 제품의 디자인이 출원 및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사항으로 카피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지 예외 주장을 통한 자진신고 과정을 거쳐 자사의 OOO 제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과정을 거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도 함께 적용되어 카피제품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KEYWORD 디자인 도용, 디자인 침해

05

A업체는 내부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에 타 업체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출원 중인 상태로, 아직 등록된 상품이 아닌 걸로 확인되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A업체는 2022년 9월경 해당 상품을 회사직원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여 중국 OEM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B업체로부터 디자인침해 및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B업체는 2023년 3월 8일날 디자인출원을 한 상태이며, 아직 등록은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원래 디자인출원은 출원 중에는 공개가 되지 않으나, 경고장에 디자인출원에 관한 첨부서류를 보내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문의견

현재는 B사가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는 발생할 염려가 없으며, 다만, 추후에 심사과정을 거쳐서 디자인등록이 될 경우에는 본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업체의 확인 결과, B 업체에서 2021년에 온라인에서 주방매트에 대해서 판매 또는 공개행위가 이루어 진바,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 B업체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한 거절 또는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사, B 업체에서 추후 디자인 등록을 유효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멘터리의 등록된 디자인과 본 업체의 디자인이 유사함을 입증해야만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B 업체에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A 업체는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B 업체에서 저작권을 설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B업체의 매트를 그대로 도용한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A업체는 2022년 9월 제품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침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설사 저작권 등록을 받지는 않더라도 창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은 자연 발생하는 권리이며, 본 업체가 모방을 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동일한 저작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KEYWORD 상표권 양도

06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타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을 예정인데, 상표권 이전시 주의사항은?

지역
부산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자문의견

상표권 양도시 상표등록원부를 통하여 상표권에 관계된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원부에 이해관계인(질권자, 사용권자 등)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먼저 등록된 권리에 의하여 상표권 행사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표권의 양도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상표권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양도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양도인의 상표를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만일 사전 협의가 없다면 양수인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2개의 상표가 공존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상표권 양도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게 보일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통의 한 명의 대리인에게 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전체적인 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상표권을 양도받는 경우 그 상표는 대한민국의 상표권이다. 즉 양도받은 상표권에 의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그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유통할 권리를 가질 뿐이며,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른 국가에도 상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각 국가마다 상표권을 등록받아야 하며(속지주의 원칙),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상표권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빠른 상표등록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상표권이 행사되며, 수출 대상 국가의 영역에서는 그 국가의 상표권이 권한을 가지므로, 최악의 경우 수출 대상 국가에서 다른 상표권자로 인하여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해외에서 상표등록을 받는 방안으로는, 개별국에 직접 상표등록을 받는 방안과,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을 통하여 지정국 전체에 일괄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략 3개국 이상에 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마드리드 국제 상표등록을 통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KEYWORD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상표권, 로고디자인

07

로고를 비슷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지역
경남
김해

해당분야

종합 디자인

자문의견

1. 로고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에 관하여

로고 디자인의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자에게 권리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므로 저작권법 상의 침해방지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상업적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였다면 상표권이 발생하여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상품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이므로 단순한 로고 디자인은 상품으로 볼 수 없어 디자인권으로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상품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로고디자인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상표로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이라든지,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등을 송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KEYWORD 상표권, 특허등록

08

상표권의 효력 범위와 레시피와 같은 기술 형태가 아닌 저작권의 특허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제품 디자인

자문의견

상표법 제89조에 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현재 상표를 등록해 놓은 지정상품을 보면 한식점업, 간이음식점업 등의 서비스 분야에 등록을 해 놓은 것이어서 국밥의 상품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표만으로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정상품등의 추가를 통하여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레시피 특허등록의 유의사항**

특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공개하지 않을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코카콜라와 같은 경우에 레시피 특허등록이 되지 않고 회사의 영업 비밀, 즉 노하우로 보호되고 있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KEYWORD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09

공모전 당선 후 시행사에서 저작권 양도 요청이 왔는데 위와 같은 요청이 정당한가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시각 디자인

사례경과

공모전 당선 후 저작권 양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작물은 기업의 재산권으로 2차적 저작권의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생각이지만 저작권의 양도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같은 시행사의 요청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대법원은 행정기관 간 상호 내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등).

최근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가 문제 된 사안에서 외부적 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대상 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입국금지 결정이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되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시행사와 내부적인 협약은 상담자에게 외부적으로 표시된 바가 없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위 협약을 근거로 시행사는 상담자에게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공모전 결과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시행사가 제시한 계약서는 저작권의 양도계약이 아니라 2차적 사용만을 허용한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저작권양도계약을 요청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부당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KEYWORD 상표출원 수정, 로고 변경

10

기존에 식별력이 있는 로고를 첨부하여 상표 출원을 하였고, 이후 최종 로고가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표 출원을 재진행 해야 하는지 또는 해당 출원일자로 로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표장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고자 하며 그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의견

1. 상표 출원 시 보정 가능 여부

상표 출원의 경우 지정상품의 추가·삭제는 가능하지만 상표를 보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새로이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표를 새로이 출원하므로 출원일자가 새로 출원하는 날짜로 정해지게 됩니다.

2. 권리이전의 경우

권리이전의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도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원 중 또는 등록 후 모두 가능하나 등록 후에는 관납료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KEYWORD 유사 디자인 범위

11

유사한 포터블 방식을 가진 스크린을 디자인하였을 때 해당 기업에서 소송을 걸지 않을 정도의 허용범위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
대구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L사의 휴대용 포터블 스크린은 디자인을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포터블 방식인데, 만약 포터블 방식을 가진 스크린을 디자인하였을 경우, 위 L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허용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디자인이 본인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사가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L사에게 달려있고, 질의하신 L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허용범위 또한 전적으로 L사에게 달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KEYWORD 소재 디자인 권리

12

개인 CMF 소재(호두껍질, 송진, 카나우바 왁스 등)를 적정 비율을 통해 도출한 소재를 통해 식기류를 통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타인이 동일 소재의 식기가 아닌 다른 것을 제작할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소재

사례경과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한 CMF 소재(호두껍질, 송진, 카나우바 왁스 등 천연소재 바인더만 이용)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식기를 도안했는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보호 방법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통상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을 통하여 획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이 있는데, CMF 소재의 경우에는 물품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니며, 물품의 식별 표기가 아니어서 상표권의 대상이 아니며, 예술품 등의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에 해당되므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통하여 CMF 소재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통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말씀드린 법적 보호는 특허권 획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발한 CMF 소재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다음, 등록받은 발명을 사용하는 제3자에게는 특허권의 침해를 근거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문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CMF 레시피에 대한 노하우나 영업 비밀을 제3자가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다 두텁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도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KEYWORD 디자인 표절

13

개인 작업 계정에 있는 작업물을 타 계정에서 거의 유사하게 업로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이 있나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신청인은 바다 관련 포스터를 작업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3자가 같은 주제의 유사 포스터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포스터가 매우 유사하여 표절이 의심되어 문의하였지만, 제3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표절이 인정되는 기준과 표절인 것을 알았을 때의 조치, 레퍼런스 참조 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제3자의 대상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려면 우선 타인의 창작물이 저작물로 성립해야 하고, 대상 저작물로부터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의거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포스터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진다는 전제로 제3자가 지인의 개인 작업 계정 또는 작업과정과 결과물에 접근하기가 용이한지, 포스터의 배경, 구도 및 구성 아이템의 동일/유사 정도, 작가들의 성장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포스터의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먼저 침해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분쟁 조정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경우,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하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대한 제권 또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저작물 표절 여부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KEYWORD 유사 상표권 출원

14

2008년 개업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 내 있는 다른 업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상표권 재신청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자문신청기업은 2008년 개업하여 상호를 브랜드로 사용중이나 최근,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부산의 다른 업체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음. 이에 등록된 제3자의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다른 제도를 통하여 다른 업체의 상표를 소멸시키거나,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현 브랜드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기에 상호 변경이 부담스러운 상황임

자문의견

신청인의 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에 의해 거절되었는데, 선등록상표는 2015년 9월 24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의신청으로는 등록상표를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제도를 통한 해경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고래와 커피를 포함하는 아래의 선등록상표 등과 관념,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고래커피"에 대한 무효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을 것이나,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자, 상표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품질오인/상품의 출처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상표를 거절시킨 등록상표 이외에, 상표권자는 다수의 관련 상표에 대한 출원을 진행하여, 다수의 유사 상표들이 존재하여, 신청인이 상표를 재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KEYWORD 저작권보호

15

디자인 작업물에서 아이디어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어나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단순 디자인 아이디어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문의하였고, 디자인 작업물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공적 사이트에 공유할 때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구체적인 기술을 기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물의 저작권 보호는 제품의 형상에 대한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16

개인이 제작한 바인더를 교육용으로 배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는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출원

사례경과

자문신청기업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수업에 필요한 바인더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 바인더 내지(아래의 그림 등 여러 장)는 기존 시중의 제품에 비하여 효과적인 인생목표 설정 및 시간 관리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독창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제작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바인더 내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등에 대한 독점권이 디자인권과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되는 독점권인 저작권에 모두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바인더 내지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에 사용되는 도안, 캐릭터, 특정 모양이나 형상, 로고 등에 대해서 바인더 내지와 구분해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응용미술 부분에 해당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합니다.

관인생략

출원번호통지서

출 원 일 자 2023.06.05
특 기 사 항 공개신청(무)
출 원 번 호 30-2023-0021471 (접수번호 1-1-2023-0618718-22)
(DAS접근코드:5613)
출원인 성명 김영숙(4-2020-017995-5)
대리인 성명 정일영(9-2012-000907-1)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신청인(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증빙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17

전기차 배터리 실시간 진단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확정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출원

사례결과

2024년 상반기내 서비스 개시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실시간 진단관련 Mobile Application의 명칭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여 확정 및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자문의견

신청인과 상담하여 신청인이 상표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지정상품은 '전기차 배터리 실시간 진단 관련 플랫폼 접속 제공업 등'으로 확인되어 38류에 속하는 '인터넷상의 플랫폼 접속 제공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23년 06월 30일 자로 국내 상표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관인생략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일자 2023.06.30
특기사항
출원번호 40-2023-0116396 (접수번호 1-1-2023-0723892-99)
출원인 명칭 (주)배터와이(1-2021-017391-1)
대리인 성명 신진현(9-2013-001029-1)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지식재산제도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18

싱크대의 유분을 걸러주는 제품을 개발했는데,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출원

사례결과

홍원테크에서 현재 싱크대에서 배출되는 이물질과 기름(유분)을 걸러주는 싱크트랩이란 제품을 개발하여 디자인 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문의견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신청인이 국내 디자인출원을 희망하는 물품은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싱크대용 트랩(싱크대에서 배출되는 오수에서 기름성분을 따로 걸러주는 기능을 함)'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해 '싱크대용 트랩'의 개개의 구성품이 아닌 뚜껑이 덮인 전체 형상에 대하여 국내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첨부서류와 같이 2023년 07년 14일 자로 국내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관인생략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일자 2023.07.14
특기사항 공개신청(무)
출원번호 30-2023-0027088 (접수번호 1-1-2023-0776963-63)
(DAS접근코드184A)
출원인 성명 김홍수(4-2018-071362-1) 외 1명
대리인 성명 신진현(9-2013-001029-1)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지식재산제도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19

당사가 개발한 카페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가능할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출원

사례경과

대구를 나타내는 대프리카를 이용하여 커피 등의 상품과 카페업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브랜드 론칭하였으며, 상표등록 가능성과 상표출원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대프리카를 포함하는 상표가 검색되나, 대상 상표와 검색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경우, 대상 상표 "대프리카페+로고"와 "대프리카"는 발음, 관념, 외관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들 검색상표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유사상표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관인생략

출원번호통지서

출 원 일 자 2023.07.14
특 기 사 항 공개신청(무)
출 원 번 호 30-2023-0027088 (접수번호 1-1-2023-0776963-63)
(DAS접근코드:1844)
출원인 성명 김종수(4-2018-071362-1) 외 1명
대리인 성명 신진현(9-2013-001029-1)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번호 : 015117(권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20

배관 파이프와 배수구 연결을 도와주는 고무금형 개발에 따라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출원

사례경과

신청인은 배관 파이프와 배수구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고무금형을 개발하여, 여러 품목의 배수구와 배관 파이프를 하나의 고무패킹으로 연결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고안하여 디자인 출원을 희망합니다.

자문의견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신청인이 국내 디자인출원을 희망하는 물품은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패킹' 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해 '관이음용 패킹'이라는 명칭으로 국내 디자인권을 출원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23년 07년 14일자로 국내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원번호통지서

출 원 일 자 2023.07.14
특 기 사 항 공개신청(무)
출 원 번 호 30-2023-0027095 (접수번호 1-1-2023-0777161-31)
(DAS접근코드:CC2F)
출원인 성명 차채은(4-2023-048429-2) 외 1명
대리인 성명 신진현(9-2013-001029-1)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번호 : 015117(권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

21

지역
광주

KEYWORD 저작권 침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S2B학교장터(공공기관 우선 구매몰)에서 동의 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및 구제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직업체험 색칠키트 / 다문화체험 색칠키트)

해당분야

저작권

사례경과

본사에서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상품(직업체험 색칠키트 / 다문화체험 색칠키트)을 S2B 학교장터(공공기관 우선 구매몰)에서 동의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및 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 색칠키트에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므로 저작물로 보호된다)
- 타 업체의 무단 이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타 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자가 창작한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타 업체가 저작권자인 신청인에게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신청인의 대응방법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경고장을 송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고장 송부와 별도로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심판이나 소송 등도 가능합니다.

22

지역
광주

KEYWORD 디자인권, 저작권

한옥 리모델링 과정 중 한국의 오래된 벽지를 재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문의합니다.

해당분야

저작권

사례경과

한옥 리모델링 과정 중 한국의 오래된 벽지를 재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 벽지에 대한 디자인 출원 필요 여부
  기존의 제품과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을 한 후 등록을 받아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벽지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벽지의 경우,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첫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된 내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23

자사 제품에 대한 카피제품 유통 업체에 대한 경고장 작성을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저작권

사례경과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 중인데 타 업체에서 자회사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장 작성에 대한 심화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은 타인의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기초 상담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제품과 상대방의 모방제품은 외양, 기능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고소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EYWORD 디자인권, 저작권

24

신규 제품 론칭 후 브랜드 아트워크 변형 판매로 인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역
광주

해당분야

저작권

사례경과

신규 제품 론칭 후, 브랜드 아트워크 변형 판매로 인한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 아트워크에 대한 디자인권의 인정 여부
  아트워크는 시각예술에서의 작품 등을 의미하며 결과물이 형상 및 모양을 갖고 있을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인정되며, 디자인권은 디자인 출원을 통해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 아트워크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 여부
  아트워크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대응방법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경고장을 송부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 및 심판이나 민형사상의 청구·소송 등 대응도 가능합니다.

KEYWORD 저작권

25

ESG 경영 사례집 출판을 할 경우, 대형 글로벌 회사의 보고서를 번역 · 편집해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를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저작권

사례경과

ESG 경영 사례집 출판을 하는데 애플, 디즈니 등 대형 글로벌 회사의 보고서를 번역 · 편집하여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나온 자료이다보니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저작물의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그 권한이 귀속되고 최초 저작물에서 제3자가 변형, 각색, 선택, 배열, 번역, 편집 등 여러 방식으로 저작물을 편집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이는 별도의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 저작물이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소재인 원저작물의 내용이나, 영상, 표현 등이 들어갔다면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ESG경영 사례집 출판을 위해 글로벌 회사의 보고서를 번역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인 보고서를 채용했다면, 이를 글로벌 회사로부터 저작물 사용 허락을 구하여 사용해야 하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를 편집해서 별도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KEYWORD 디자인 출원

26

과학정보통신부 과학상품 선정에 따른 제품 디자인(황○○○)에 대한 디자인 특허 출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디자인권

사례경과

과학정보통신부 과학상품 선정에 따른 제품 디자인(황○○○)에 대한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 출원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은 창작한 디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시도와 육면도, 또는 형상이나 모양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도면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 전 관련 분야에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유사디자인이 있을 시 이를 회피한 디자인을 가지고 출원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의 사항을 토대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KEYWORD 상표권

27

경쟁회사 상표권 침해 요소에 따른 자문입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상표권

사례경과

현재 진행하는 사업의 상품에 대한 상표(아○○)의 상표 침해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자문 요청 _ ㈜남○○, ㈜유○○○ 상표권 침해 여부

자문의견

현재 사용하는 상표에는 '아○○'이 포함되어 있고 상품 중 일부는 03류에 포함하는 상표를 포함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계속할 경우 분쟁의 발생요소가 우려되고, 등록받은 타사의 상표와 동일한 상품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양태, 유사군 여부에 따라 상표침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상황에서는 상표침해를 회피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KEYWORD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

28

공모전에 출품한 교육콘텐츠에 대해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공지사실을 통해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저작권

사례경과

공모전에 출품한 교육콘텐츠에 대해 스타트업으로부터 콘텐츠 인수 혹은 입사 제의를 받았는데, 콘텐츠를 인도할 경우 디자인 저작권 및 인도비용, 입사를 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권리화 여부에 대한 자문

자문의견

-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란?

  디자인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디자인 보호법 및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우며,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침해에 노출되어 있음. 창작자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디자인 공지증명은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 창작자와 창작시기를 공신력 있게 증명받는 제도로, 권리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장점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창작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과정 중 개발된 수십개의 디자인이 공지등록된 경우 모방디자인의 출원 등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방지와 이에 대한 분쟁대응할 수 있으며, 공지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 · 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 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 신청인의 대응방법

  디자인공지 증명은 신청 후 바로 접수되는 '무심사'로 운영되며, 디자인공지증명이 되었다고 디자인권 등록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니며, 디자인권 출원 심사 과정에서 디자인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KEYWORD 디자인 권리 보호

29

졸업작품 '킥보드 주차 벤치'의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출원 관련 자문입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디자인권, 저작권

사례경과

디자인과 학생으로 '킥보드 주차벤치' 졸업 창작 작품을 전시하였고, 제주도 내 디자인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여 현장에 맞게 변형하여 공모전에서 당선이 될 경우, 제작을 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원 창작자의 권리 보호 범위와 대가에 대해 자문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졸업작품의 전시 작품은 '킥보드 거치 가능 벤치'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심미적 요소나 기능성에 있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외부 디자인 업체가 원 제작자의 허락을 받으면 공모전 아이디어로 활용은 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 보호나 보상에 관련하여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권리화를 한 후에 보호가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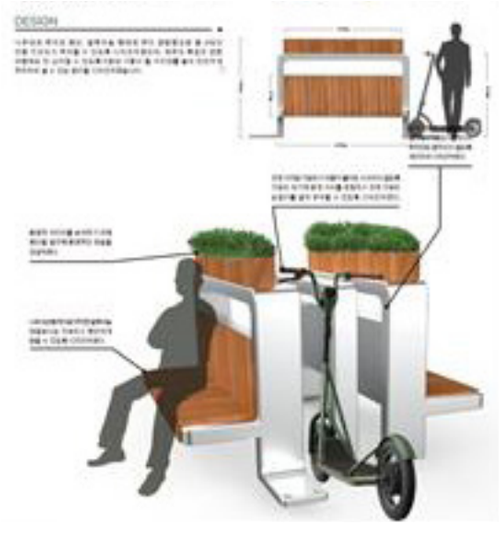

KEYWORD 무료이미지

30

해외 수출용 상품의 단상자 및 튜브 디자인 중 일부를 무료 상업용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지역
대전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화장품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해외 수출용 어린이 치약을 생산 예정인데, 단상자와 튜브 패키지 디자인의 일부를 픽○○○와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 상업용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해도 되나요?

무료 상업용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추후 원작자가 유료 이미지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통상적으로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사용 허락에 관한 범위나 제한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무료 이미지제공 사이트의 경우에도 개인적 용도의 사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지만 무료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무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정한 변형을 가하여 사용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용으로 상기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무료 이미지에 상당한 변형을 가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EYWORD 해외 지식재산권

31

해외 수출과 상품 보호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상표)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지원책이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기타디자인

사례경과

해외 수출과 상품 보호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상표)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지원책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1. 해외수출과 상품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상표)을 위한 프로세스 전반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상표)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로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접출원**: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국가의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해외출원 방법으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보통은 기업이 한국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한국 대리인이 중개 역할을 하여 해외 대리인에게 상표출원을 지시하고, 그 절차와 결과들을 한국 대리인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출원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등록이 가능한 지 선행 상표에 대한 검색을 진행한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과 선행 상표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중복 발생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은 출원 지시 후 일주일 이내로 가능하며, 출원 후부터 심사를 통해 거절결정 또는 등록 결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은 약 1~2년이 소요됩니다.

  출원전 각국의 심사 기준에 맞는 지정상품 및 기타 부등록 사유에 대하여 현지 대리인에게 검토의견을 받아 미리 거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마드리드(3개국가 이상 지정한 경우) 출원보다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 **마드리드**: 직접 출원 절차 방식과 다르게 해외 대리인의 선임없이 한국 대리인만 선임하여 국제사무국(WIPO)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다수 국가를 동시에 지정하는 출원을 합니다.

  국제상표 등록 출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사 결과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국에서 자동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KEYWORD 해외 지식재산권

31

해외 수출과 상품보호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상표)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지원책이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자문의견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에 국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어 다국출원시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출원 이후 한국 특허청 방식심사, WIPO 방식 심사 이후 지정국 심사로 진입하기 때문에, 개별국 출원보다 등록시점 까지의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기초출원이 소멸·무효·취하되는 경우에 마드리드에 출원한 상표의 효력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해외 수출과 상품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상표)와 관련된 지원책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과 상품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과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수출증명 서류(계약서, 업무협약 등) 또는 수출 계획서를 증빙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해외권리화 비용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맵(심화/일반), 디자인맵(심화/일반), 해외권리화 비용 지원,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디자인 개발(포장/제품/화상), 브랜드 개발(신규/리뉴얼/비영어권). 기업 IP 경영 진단·구축 등이 있습니다.

-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KEYWORD 디자인권과 상표권

32

디자인 특허와 상표 특허의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디자인 특허의 적용 범위와, 상표 특허와 연관해서 타사의 권리침해를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와 더불어 상표등록의 범위는 타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1. 디자인권의 적용범위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체 및 화상디자인을 제외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과 같은 물품은 외관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디자인권 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제3자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디자인권 자는 그 실시를 중지시킬 수 있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며, 먼저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은 물품 등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반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함.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KEYWORD 디자인권과 상표권

32

디자인 특허와 상표특허의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자문의견

2. 상표의 등록범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7호).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그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견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며,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격한 차이로 인해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33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에 디자인 업체 직원들 이름을 같이 등록하는 것과 그에 대한 권리 주장 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디자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인 제작 의뢰를 한 경우 디자인 지식재산권 등록 시에 사전에 의뢰 기업과 상의 없이 출원인에 디자인 업체 직원들의 이름을 같이 등록하는 것과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1. 제작 의뢰를 외주로 한 경우, 사전에 기업과 상의 없이 출원인에 디자인 업체 직원들 이름을 같이 등록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크게 창작자와 승계인으로 구분됩니다.

- 창작자 : “디자인을 창작한 자”란 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 창작 행위를 한 사람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내지 지배적인 특정 부분을 창작하거나 그 창작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함
- 승계인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즉 창작자 이외의 법률상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승계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기업과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혹은 협약서 등을 상세히 살펴본 이후 외주업체의 작업의 결과물이 모두 상담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외주업체 직원의 이름이 출원된 디자인의 출원인에 있는지 창작자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기업이 정당한 승계인으로 계약(협약) 되어 있는 경우

→ 출원인에 있는 경우, 외주업체의 동의를 얻어 출원인 변경 신청을 진행하며, 상속, 전부 양도, 일부 양도, 지분 포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권리관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 창작자에게 있는 경우, 외주업체의 동의 없이 디자인 업체 직원들의 이름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상담기업이 정당한 승계인으로 계약이 되어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외주업체와의 계약 및 업무 진행 시 주고받은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계약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33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에 디자인업체 직원들 이름을 같이 등록하는 것과 그에 대한 권리주장 시 대응이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자문의견

2.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상담기업이 정당한 승계인으로 계약(협약)이 되어있는 경우, 외주업체는 무권리자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원인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공동창작자가 출원인 명의에서 제외된 경우 등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법제 26조 제4항), 그 등록 전에는 거절 이유(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법 제3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며, 그 등록 후에는 무효 사유(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외주업체는 디자인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KEYWORD 해외지식재산권 분쟁

34

카피캣, 모방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제품,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당사는 OO OOO디자인 상품을 상품화 양산 준비중에 있습니다.
몇 개월 안에 제품이 완성되어 시장에 나올 예정이기에 국내 판로 확보와 입점 등을 빠르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KOTRA, KITA, 지역기관 지원까지 수출화 및 판매를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카피캣, 모방상품 등에 대한 방어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KOTRA와 정부기관에서 지정된 자문 위원분들에게 해외 진출 시 대응은 해외상표출원, 해외디자인 권리화 진행에도 작은 방어는 될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작은 소기업이 해외 법적 대응까지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외(특히 중국)에서 해당 상품을 모방한 카피로 판매 진행 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1. 디자인과 상표등록

디자인 등록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을 보호하고, 상표등록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합니다. 즉, 디자인 등록은 어떤 물건의 형상·모양·색채와 동일·유사한 물건을 타인이 생산, 사용, 양도 등 업으로 실시하는 것, 상표등록은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기업이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 및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것은 한글 디자인 젓가락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고, 제품의 명칭이나 브랜드, 회사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2. 해외에서 제품 모방에 대한 대응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KOTRA 등에서 최소한 해외 디자인등록 또는 해외상표등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은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부당경쟁 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이 있다고는 하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기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생각됩니다.

KEYWORD 해외지재권분쟁

34

카피캣, 모방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자문의견

상담기업은 해외, 특히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이나 상표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할까를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 디자인등록이나 상표등록도 없는 상태에서 보호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디자인 등록이나 상표등록이 있어야 모방 제품 등장 시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이라도 보낼 수 있을 것이므로, 비록 중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낮다 하나 중국 시장에 진입이 확실하고 모방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해외 지재권 출원 및 확보, 분쟁 대응의 어려운점

해외에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권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게 되는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대리인들은 거절 이유 검토, 의견 제시, 의견서 제출 등에 투입된 시간에 비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시간 보수제(time charge)를 택하고 있어, 출원 이후 심사관이 몇 번이나 거절 이유를 보내오는지에 따라 실제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시간당 비용도 상이한데, 유럽, 미국, 일본의 경우 시간당 비용이 높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이 상대적으로 시간당 비용이 낮습니다. 이러한 비용 수준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과도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강도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재권 보호 강도가 높다는 것이 분쟁 시 대응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호 강도가 높은 나라에서 심판이나 재판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 그러한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나 재판에 드는 비용은 출원에 비해 훨씬 높고(수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배가 될 수도 있음), 심판이나 재판에 이긴다 하더라도 소모된(또는 소모될)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로 손해이거나 심판이나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4.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RIPC, 테크노파크 등에서 해외지재권 분쟁 발생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지원 사업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KEYWORD 해외 상표권

35

미국 상표권 등록 후 상표권 양도를 위한 양도대금 지불 및 상표권 효력, 유지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기타디자인

사례경과

화장품 제조회사입니다. 새로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를 미국 바이어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표권 등록은 미국 바이어와 진행하였으며 수출 진행이 안될 시에 상표권은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수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표권 양도를 위해 미화 3만 불을 양도대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3만 불의 양도대금 지불 없이 상표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미국에서의 상표권 효력과 유지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현재 상표권이 미국 바이어에게 등록되어 있다면 양자가 협력해야 상표권을 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항에 대한 계약서나 관련 문건의 확보가 필요합니다.(구두계약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 필요)

또한, 상기 양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살펴보고, 설령 무상이라 하더라도 상표권 획득이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바이어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무효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상을 통해 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표 유지 비용은 대략 관납료로 425불이 소요되며(10년간 유지비) 이외 대리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운용전략

36

중소기업에 특허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운용 우수사례 또는 운용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당사에서는 스마트팜, IoT와 관련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군의 경우는 특허 출원/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디자인권도 등록이 된 경우가 있으나 수차례 특허 및 디자인권 등을 출원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리 방어 효과 또는 배타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특허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운용 우수사례 또는 운용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의 전략 수립 및 IP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의견

중소기업의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의 행사 전략은 제품 생산 또는 기술이전 외에 배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익이 없습니다.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디자인권의 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2. 특허침해가 빈번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설령 국내에서 특허 또는 디자인 침해 사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 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4.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액도 수백만 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음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IP의 배타권 행사에 몰입하기보다는 IP 금융, 또는 기술이전, 크로스-라이선싱(cross licensing)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7

지역
대전

KEYWORD 저작물

공유마당 저작물 출처를 표기 후 개발 완료된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상표 출원 또는 디자인 출원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풍속화가 OOO의 OOO 작품을 공유마당에서 저작물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확인 후 그림 속 이미지를 발췌하여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된 디자인으로 상표 출원 또는 디자인 출원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인의 상표는 풍속화가 OOO의 OOO그림과 “OO”라는 국문자가 결합된 표장으로 출원인의 상표를 검색어로 해당 유사군 코드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검색된 선등록상표의 경우 본 출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출원인의 동일 명칭의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출원인 상표에 포함된 이미지는 출원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공유마당에 게시된 타인의 저작물이므로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출원인의 상표에 포함하여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에 게시된 문구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미지의 소유권을 이전 혹은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8

지역
대전

KEYWORD 저작물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웹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브랜드 로고, 슬로건,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해 무단 도용이나 2차 제작물 생산, 상업적 복사 및 배포를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웹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브랜드 로고, 슬로건,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단 도용이나 2차 제작물 생산, 상업적 복사 및 배포를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자문의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그 종류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으며, 의뢰인의 저작물은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에 의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웹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이미 발생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브랜드 로고나 슬로건은 저작권 뿐 아니라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KEYWORD 공모작의 지식재산권 출원

39

공모전 수상작으로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제품이 실용신안이 가능한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OO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입니다. 공모전 수상작으로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공모전 수상작의 경우 1년 이내로 출원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제품이 실용신안이 가능한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출원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자문의견

1. 공모작 수상작의 경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합니다)은 공지(일반에 널리 알려짐)된 것과 동일한 경우 특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이하 '발명 등' 이라 합니다)을 개발한 사람이 공지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공모의 경우 대부분 일반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모에 제출한 발명 등도 공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공지 발명 등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발한 발명 등을 논문, 전시회, 기타 사업상의 이유로 공개했다고 하여 자신이 개발한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공지 후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해당 공지를 선행기술(또는 선행 디자인)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지 예외) 즉, 거절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가 없게 되므로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허법 등에서 공지 예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지 후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특허 출원서 등에 공지 예외임을 표시(체크)해야 하며, 공지의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서의 경우 2023년 9월에 공모했다고 하니 2024년 9월 이전에 출원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KEYWORD 공모작의 지식재산권 출원

39

공모전 수상작으로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제품이 실용신안이 가능한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지역
대전

자문의견

2. 출원하고자 하는 제품이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신청인과 문답으로 볼 때, 신청인은 디자인 등록 출원이 아닌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관장하는 지식재산권은 대표적으로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이 있고, 이 중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은 기술적 내용에, 디자인 등록은 물건의 모양, 형상, 색채에 대해, 상표등록은 상품 등의 표시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출원하고자 하는 실용신안 등록은 특허와 큰 차이가 없고 존속기간만 10년(특허는 20년)으로 짧습니다. 최근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은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지이고, 두 번째는 출원 시 등록 가능한지입니다. 특허의 경우 물건과 방법으로 모두 출원이 가능하나 실용신안등록은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공모작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방법이나 서비스 방법등은 애초부터 실용신안등록 출원대상이 되지 않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록 가능한지 묻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과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용신안 등록 출원하고자 하는 물건의 기술적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설명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3. 출원시의 어려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서와 목차 등의 형식도 다르고, 내용이나 문체 등도 달라 일반인이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허명세서 등이 일반 문서와 다른 이유는 심사관이나 변리사가 이러한 형식과 내용 전개에 익숙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권리범위의 명확한 설정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권리범위인 청구범위가 중요하고, 이러한 청구범위의 형성에 현재의 명세서 형태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나 명세사 등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명세서를 많이 읽어보고 따라 해보고,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 대리를 질의하였는데, 대한변리사회에서 무료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그쪽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EYWORD 상표권 양도

40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금액 책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상표권 양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지식재산권(상표권 포함)의 처분행위는, 재산권 자체의 양도 및 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양도 금액을 책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해당 상표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 해당 상표의 해외 출원 확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 상표권 중 지정 상품의 클래스(구분)가 얼마나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 등록된 상표권의 독점 범위 즉, 지정 상품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 상표권의 표장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문, 영문, 로고 각각 별도로 독립된 권리들이 존재하는지 등

KEYWORD 랜드마크 일러스트 제품

41

지역 관광지 랜드마크를 도안화(일러스트)하여 제품에 프린트하여 판매할 경우,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지역 관광지의 랜드마크를 도안화(일러스트)하여 제품에 프린트하여 판매할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제품 판매 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허용 범위 등
2. 디자인 특허 등록 허용 범위
3. 국립, 지자체 관광지가 아닌 민영기관/기업이 운영하는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경우 자체 개발된 도안의 지식재산 등록 가능 여부

자문의견

1.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허용 범위

랜드마크는 상표/디자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권리가 있는지, 권리자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랜드마크의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나 디자인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도 허락받아야 하나, 저작권 제한 범위 내에서 실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등록 허용 범위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다르고, 새로운 미감을 형성하는 경우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 비용이 창작성)

3. 민영기관/기업 운영하는 랜드마크 포함 시

위 1번을 참고하시고, 민영기관/기업은 더욱 사용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자체 개발 도안의 IP 등록 검토

새로운 도안은 디자인, 저작권, 상표로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재권 출원 전략 검토 필요)

KEYWORD 디자인 출원 / 특허 출원

42

유아용품(제품 디자인) 출시할 경우, 모방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당사는 유아용품(제품 디자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특허 출원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또한, 유아용품 특성상 타사에서 더 저렴한 금액으로 유사한 디자인과 기능적인 요소의 모방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유사 모방 제품으로부터 어떻게 당사의 제품을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1. 디자인 출원 전략

전체의 형상에 대한 디자인 출원 외에, 부분 형상이 특징이 있는 경우, 부분 디자인으로도 출원하여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 디자인을 예상하여 해당 디자인을 출원하여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이 기능성 형상인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리사와 상담을 통한 출원 전략 수립이 도움이 됩니다.

2. 특허 출원 전략

디자인을 넘어 새로운 유아용품을 발명하였거나 기존 용품의 구조나 형태, 소재 등의 변경, 개량을 통해 종래와 다른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는 디자인에 비해 넓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디자인과 특허는 등록받기 위해서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디자인, 특허 출원 전에 디자인과 제품(특허 기술 사항)이 공개되어선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공지 예외 주장 수단이 있지만 공개 전에 반드시 디자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넓은 권리 범위 확보를 위하여 디자인 및 특허 출원은 변리사와 긴밀한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원 이후 제품을 공개, 광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특허 출원되었음을 표시하여 상대방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분별한 침해 제품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KEYWORD 픽셀아트, 디자인 저작권

43

픽셀아트를 활용한 캐릭터 블록 상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픽셀아트를 활용한 기존 캐릭터 블록 형태의 상품에 대한 저작권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존의 도안이나 장소를 활용한 픽셀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과 상업활동 시 유의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픽셀아트를 통한 저작물 완성 시, 그 대상(예시. 율곡 이이의 초상 등)에 대한 침해 등의 이슈는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픽셀아트로 표현한 것으로 비슷한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저작물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일응 저작권에 의한 권리행사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작권은 '표현'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이니, 만약 동일한 객체를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하는 것은 막지 못해도, 동일한 픽셀 아트로 진행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상기 픽셀아트 예상 결과물에 대하여 드라마 또는 원 대상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인격권 등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픽셀아트의 대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나 인물 또는 초상 등을 활용할 때 문제는 없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KEYWORD 디자인 저작권 보호

44

자사의 디자인 모티브와 유사한 디자인 상품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최근 자사의 디자인 모티브를 반영한 유사 디자인 상품과 브랜드 네이밍을 활용한 론칭 기업들이 있습니다. 로컬 업체이며 간혹, 당사가 생산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난감한 상황으로 자문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당사의 제품 결과물은 순수한 창작 그림과 드라마 장면을 이용한 그림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한 창작 그림인 경우, 저작물성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그림 자체가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장면을 특이한 그림 스타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정도에 따라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를 변론으로 한다면, 드라마 장면을 특이한 그림 스타일로 표현한 당사의 제품과 타사의 제품을 대비해 볼 때,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 스타일 또한 하나의 저작권으로 삼아 이에 대한 권리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저작권 발생일과 입증자료를 정리해서 경고장 등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당사의 작품과 관련해서, 드라마 또는 원 대상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인격권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KEYWORD 디자인 계약, 디자인 용역

45

디자인 업체에 제작물을 의뢰할 경우, 결과물 ai 원본 파일을 받아 디자인 수정 또는 가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당사는 강원도 내 제조업으로 투명 페트병 소재별 분리배출 장치 및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는 디자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리플릿, 카탈로그, 배너 등 디자인 제작물이 필요할 때는 디자인 회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제작물을 의뢰할 경우, ai파일(작업결과물 원본)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디자인 수정/가공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디자인의 소유권, 즉 저작권 내지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디자인 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ai파일을 함께 받기를 희망하거나, 해당 파일을 수정・가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과 의뢰 당시 계약서에 해당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하시어 추후 분쟁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으시길 제안합니다.

KEYWORD 상표권 사용

46

TV 프로그램(생○○○○)에 출연한 가게에서 판매하는 제품 포장에 프로그램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A 업체는 TV 프로그램(생○○○○)에 방영되어 제품 포장 스티커 등에 달인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 제품 부착용 스티커 작업에 계속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TV 프로그램 '생○○○○'은 관련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용 형태는 위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하고, 등록상표의 지정 서비스업과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송사와 출연 협의 과정에서 '생○○○○' 상표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면 계속 사용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약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명시적, 묵시적 동의 가능)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EYWORD BI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

47

개발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개발 중인 농식품 BI(Brand Identity)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의견

신청기업의 BI 디자인은 상표와 디자인 출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BI 상표 출원 범위로는 기존 로고(워드)마크 출원 범위를 고려하여, 제05/29/30/32/35류 출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BI의 디자인 출원은 스티커 또는 전사지로 1건 디자인 출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고, 디자인권의 경우 약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상표와 디자인권 출원 비용은 출원 범위가 결정되면 자세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의견제출 통지서

48

자체적으로 디자인 출원 신청 후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자체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신청하였는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일반적으로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대응 등록 등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올바르게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행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은 지정기간으로서 특허청에 1개월씩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통지받은 거절 이유에 따라 극복 방법은 다양하며, 단순한 오기재나 도면의 수정 등은 의견제출 통지서 하단의 담당 심사관과 소통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동일 상표

49

심볼이 들어간 로고의 등록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반려동물용품 로고 디자인 개발 의뢰를 받아 신규로 심볼이 들어간 로고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로고의 등록 방법과 등록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의견

반려동물 용품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용 방취제, 동물용 기저귀, 동물용 리드줄, 동물용 의류, 동물용 쿠션, 동물용 간식, 사료 등 구체적인 상품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도·소매만 하는지, 주문 제작, 디자인업까지 하는 것인지 '포괄적인 표현' 보다는 '세부적인 명칭'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표법상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선출원 또는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등록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 방지를 위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표의 동일·유사는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를 판단하게 되는데,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동일·유사하면 유사로 판단합니다. 상기 '000' 상표는 유사 상표가 발견되어, 이 상표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간에 문자 부분이 같고 발음이 같아 유사하다고 보아 거절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거절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로의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 상표는 동물용 의료기구, 애완동물용 휠(이동 보조구) 등에 대하여 출원하고 있는데, 이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도모해 볼 수 있으나, 만약 동물용 의료기구, 애완동물용 휠(이동 보조구)와 같은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고자 하신다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우에 따라서 '000'는 상표 또는 그 외 다른 상표 등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는바, 상품에 대한 특정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위 건과 별도로 개 형태의 로고만을 출원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개량 디자인

50

기존의 출원 디자인, 특허를 업그레이드 가능할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현재 디자인 및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디자인 및 특허의 업그레이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량 디자인, 기술에 대한 보호 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의견

기 출원(등록) 디자인 및 특허는 공개된 경우 공지 기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개량(업그레이드)한 디자인 및 발명이 자신의 선행 디자인 및 선행 특허와 비교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창작비 용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기존 디자인(신청인의 선행 디자인 포함)과 형상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개량이라면 디자인 등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디자인의 디자인 출원을 통해 등록받고, 독점 실시권인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량 기술(발명)의 경우, 기존 특허(신청인의 선행 특허 포함)와 기술의 구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개량된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 등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발명의 특허 출원을 통해 등록받고, 독점 실시권인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KEYWORD 패션디자인, 제조방법 특허

51

의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효용이 있을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패션디자인

사례경과

자사는 의류 디자인 및 판매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의류 디자인 등록 5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디자인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재생섬유와 같은 특수 직물을 이용한 제조 방법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허의 효용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의견

1. 사업의 주력 아이템이 의상 디자인에 있으므로, 계속적인 의류(재킷, 바지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의류의 경우 일부 심사 대상 물품으로 심사가 간편하게 조기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력 아이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2. 의류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같은 제조 방법 특허는 제품 홍보, 회사 경쟁력 확보 및 벤처기업 인증 등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제3자 침해의 경우 침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KEYWORD 지식재산권 출원, 브랜드 상표권

52

신규 제작 브랜드 상표권 출원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지역
강원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지역 특화상품 및 기념품 브랜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브랜드 상표권 출원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가능 여부에 따라 브랜드 네임 확정하고자 함)

자문의견

신청기업의 상품은 공예기념품 제21류의 "유리제 공예 조각품"(G5203)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유리제 공예 제품이기는 하나, 그것이 물 등을 담아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컵(Cup)이라면, "컵"으로도 상표 출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컵과 공예기념품 으로 이중 권리 확보도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단어 각각을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발견됩니다. 때문에, 보수적인 심사관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선등록 상표 등을 이유로 거절 이유 통지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도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중간결과물 #라이선스계약 #계약서 작성, 협의
#계약서 미작성 #디자인 가공 #계약 외 업무요구 #미수금 회수

KEYWORD 손해배상청구

01

계약서 없이 디자인 용역을 진행하다 작업 중단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CI 디자인을 의뢰받고 계약서 없이 디자인 용역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상표출원이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작업 중단 요청을 해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응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디자인 용역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화된 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구두로나마 용역 범위 및 용역대금과 같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을 소개해 준 제3자에 대한 신뢰로 CI 디자인에 대한 견적서 제공 없이 먼저 디자인을 제공하고 사후에 내부 사인물에 대한 시안과 견적서를 제공한 것으로, 본 CI 디자인에 대한 용역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디자인 제공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이며 바로 이행에 들인 비용에 관하여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청인은 용역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KEYWORD 중간결과물

02

선정되지 않은 디자인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까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패키지디자인

사례경과

화장품 용기 디자인을 의뢰받아 타사와 용역계약 후 시안으로 선정되지 않은 디자인을 폐기 요청했지만 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선정되지 않은 시안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렸고 중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또한 저에게 있는 것으로 문구수정 요청을 했지만 최종 날인된 계약서에는 중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작권 귀속 여부와 앞으로 시안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논의되어야 하나요?

자문의견

본 계약서 문언상으로는 중간결과물의 귀속에 대해서 그동안 신청인이 수정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서의 해석은 계약서 초안, 초안에 대한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날인본’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해석됨이 원칙입니다. 이에 디자인 업계의 관행상 중간결과물이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다거나 그동안 수정요청과 이를 수용하겠다는 상대방의 의견회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계약 문언 그대로 중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상대방이 실제로는 신청인의 수정 요청대로 중간 결과물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만 계약서 문구를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향후 신청인이 중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한다면, 계약서 날인본의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최종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날인을 거부하거나 수정본의 요청을 재차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KEYWORD 라이선스계약

03

콜라보로 개발하는 디자인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적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1인 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로 개발하는 디자인을 라이선스로 계약하려는 중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 할지와 디자인 양도를 진행한다면 얼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디자인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그 수수료 지급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상 기준은 없고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천차만별로 정해집니다. 다만, 관행상 수수료 지급 기준은 생산량보다는 매출 또는 순수익 기준의 %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고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산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무상 해당 자료의 제공이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이에 만약 현재 또는 당분간 예상되는 매출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도 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어 적정 금액으로 협의가 가능하여 디자인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가능하다면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금액 역시 천차만별이어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KEYWORD 계약서 작성, 협의

04

신청인 A사와 협력사인 B사는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진행하였고, 최종 개발 예정 3가지 툴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교육프로그램(△△) 이름의 사용 강제 여부, 독점계약 관련 등 어떻게 소유권을 나눠야 할까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A사는 B사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용역 개념이 아닌 공동 개발의 취지로 툴을 개발하였고, 용역 계약서에는 개발 완료한 3가지 툴에 대한 소유권이 A사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개발한 B사에서는 구두계약 및 업무 계약서를 근거로 공동 개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문의견

1. 개발 완료 예정인 3가지 툴의 B사의 탑재 여부 및 '△△' 이라는 이름 강제사용 및 독점계약에 관하여 용역 계약서상에는 A사의 소유권이 귀속되어 탑재하려면 '△△' 이름의 강제사용 사용요구는 가능합니다. 독점계약 및 독점계약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아 B사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발 완료 예정인 3가지 툴에 대한 유지, 보수 요청은 용역 계약서상에 유지 · 보수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유지 · 보수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향후 외주 개발업체와 개발 진행 시 계약서 작성 및 개발한 툴에 사업화 내지 수익 발생 관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익분 배와 관련하여서는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EYWORD 계약서 미작성

05

사전 계약서 없이 소액 단발성으로 디자인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원본 파일 요청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사전 계약서 없이 소액 단발성으로 디자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클라이언트 측에서 원본 파일을 요구하게 되면 디자인 제작 업체 측에서 디자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통상적인 관련 사례나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자문의견

통상의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사안에서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용역 공급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용역수행 결과물에 해당되는 원본 파일의 전달 범위 등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표준계약서에 따른 해석을 통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업계 관행상 디자인 용역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클라이언트의 원본 파일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활용가이드와 같이 귀속주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KEYWORD 디자인 가공

06

구두 용역으로 진행한 일러스트 결과물을 다른 디자이너가 ppt로 제작하여 본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시 제재 및 책임의 소지는 있나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A 디자이너는 Y 대학교와 논문 설명 일러스트 및 PPT 제작 용역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양 당사자 협의 후 일러스트 용역만을 완료하고, 일러스트 PNG 파일을 Y 대학교에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나 Y 대학교는 PNG 파일을 B 디자이너에게 보내면서 PPT 제작 의뢰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B 디자이너가 PPT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사용할 시 발생할 권리문제가 있나요?

자문의견

해당 일러스트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가정하면, A 디자이너는 일러스트의 저작자가 되므로, Y 대학교와 B 디자이너는 원칙적으로 A 디자이너의 동의 없이 해당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애초 논문 설명 일러스트 및 PPT 제작 용역 계약이었고, A 디자이너 또한 위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A 디자이너가 Y 대학교로부터 일러스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므로, A 디자이너는 Y 대학교가 위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PPT를 제작할 것을 알고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 디자이너는 일러스트를 그 목적인 PPT 제작에 맞게 사용한 Y 대학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B 디자이너의 경우, 위 PPT에는 본인이 창작하지 아니한 위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러스트의 저작자인 A 디자이너의 허락 없이 포트폴리오 등으로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KEYWORD 계약 외 업무요구

07

디자인 용역 진행 중 계약 외 업무 요구 및 디자인 원본 사용, 수정 가공 사용 등에 대하여 디자인 권리와 업무 강도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제품,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신청기업과 OOOO연구원이 디자인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그 후 최초 계약보다 5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크게 표준계약서와 과업지시서로 구성되었으나 OOOO연구원이 계약 외 업무를 요구하고, 신청기업이 만든 디자인 원본을 사용하는 한편, 일부는 수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1) 계약 외 업무 요구: 계약된 업무보다 4종이상 시안 제공 및 18차 이상 수정 요구, 리플릿 페이지 4p이상 초과, 현수막 및 배너 등 추가요청, 일러스트 등 추가 요구 등

2) 디자인 원본 및 수정본 사용 통보 신청기업이 만든 카드 뉴스 원본은 표지로 사용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속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1. 계약 외 업무 요구

신청기업과 OOOO연구원 간의 계약은 표준계약서 및 과제 지시서를 근거로 이뤄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표준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현수막, 배너 제작, 일러스트 제작은 표준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신청기업이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이를 수행해야 한다면, 계약 금액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두계약으로 150만 원을 약정했다가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수행해야 할 용역과제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구두로 요구하는 추가 과제를 하겠다는 동의가 없었다면 이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없고, 만일 이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가 과제 수행이 무상으로 이뤄진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추가 비용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세부사항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감독원이 OOOO연구원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제 추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디자인 원본 및 수정본 사용

디자인 원본 및 수정본 사용 신청기업과 OOOO연구원이 맺은 표준계약서 및 과제지시서를 보면 최종 결과물 및 모든 내용의 소유권을 OOOO연구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카드뉴스의 원본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OOOO연구원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OOOO연구원이 자신의 소유인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업의 입장에서는 비록 신청기업이 창작한 디자인이기는 하나, 용역과제로 수행한 것인 한, 결과물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이는 변경하여 활용할 권리도 포함)은 OOOO연구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KEYWORD 미수금 회수

08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 미지급 건에 대한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도움 요청드립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OOO 디자인사는 2022년부터 △△△△주식회사로부터 10건의 디자인 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는 용역대금 중 0,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OOO 디자인사 측에서 위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위 회사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 요청드립니다.

자문의견

먼저 △△△△(주)는 회사이므로, 그 대표자나 실질적 운영자에게 미수대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의 대표자나 실질적 운영자, 즉 OOO 디자인사와 계약을 진행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위 대표자나 운영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상담 결과 대표자나 운영자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의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미지급 대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OOO 디자인사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실질적 운영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위 △△△△(주)의 은행계좌나 거래처 채권(국가 등 공적 용역 수행에 따른 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만약 이러한 채권마저 없다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OOO 디자인사와 △△△△(주)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민사판결이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디자인용역비 관련

#용역비미지급 #용역비산정 #프리랜서 급여미지급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용역대금

KEYWORD 용역비미지급

01

지인과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선급금 외의 용역비를 미지급 받아 이에 대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공간디자인

사례경과

구두로 용역계약 체결 후 상대에게 선급금은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 받고 AS가 완료될 때 까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상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AS가 불가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받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자문의견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공사 일정 조율, 업체 선정, 현장 관리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용역범위, 하자보수 의무의 존부가 불분명하나, 신청인과 상대방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서면화된 용역계약서는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구두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상대방에 대해 미지급 용역비 1,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신청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타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는 없으나,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또는 민법 제688조의 비용 상환청구를 주장하여 상대방에 대해 기 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대법원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가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령 신청인이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용역비 및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KEYWORD 용역비산정

02

계약서 없는 프로젝트 파기 시 요청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시안비의 수준과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공간디자인

사례경과

프로젝트 파기 시 계약서가 없을 경우 통상적인 시안비의 수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계약은 원래 문서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서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해 계약의 주요내용을 확정(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의 성립은 인정됩니다. 본건에서 귀사는 고객이 요구한 용역에 대해 견적서를 제공하여 용역비에 대해 합의한 후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은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견적서에 의해 계약의 주요내용(용역의 범위, 용역 수행기간, 용역비)이 증명되므로 위 견적서가 곧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과 같이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견적서에는 그 용역비 산정 방법에 대해 정한 바 없을 것이므로 문제됩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용역의 범위와 계약 금액을 토대로 귀사가 이미 수행한 부분(기성 부분)에 대한 용역비와 나머지를 완료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전제 용역비에 기성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귀사가 70%의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총용역비×70%= ? 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30%를 마저 완료했을 때 제 비용을 공제하고 귀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100만 원이라면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사가 지금까지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료비, 인쇄비, 임대료, 디자인프로그램, 서체 구입비 등에 귀사의 인건비(또는 디자인비)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귀사는 용역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확정된 시안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를 전제로 용역비의 인상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고객이 용역비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의 거절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KEYWORD 프리랜서 급여미지급

03

프리랜서 계약 근무자의 경우 밀린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 중 급여 지연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1. 귀하와 상대 업체 사이의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볼 경우

귀하는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급여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임금체불 신고를 받은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번)

(3)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휴업 포함)의 재직 근로자에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융자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와 ○○업체 사이의 계약을 용역계약(도급계약)으로 볼 경우

하지만 귀하와 상대 업체 사이의 계약 문구로 볼 때 용역계약(도급계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용역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위 1항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단순히 민사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는 상대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상대 업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미지급 용역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KEYWORD 용역비 미지급

04

전 계약서에 의거해 진행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디자인 제작 용역에 대한 개발비 미납 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이미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물건의 납품이 완료되었지만, 용역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며, 업체대표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황으로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자문의견

계약 상대방은 1년이 넘게 용역대금을 미납하고 있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의 예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KEYWORD 디자인 용역대금

05

디자인 용역비에 대한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디자인용역비

사례경과

디자인 용역 대금에 대한 정확한 언급, 계약서 없이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 중인 사안입니다.

자문의견

디자인 용역과 관련한 대금 산정의 문제로 재판부가 공신력 있는 협회의 용역대가 산정을 요청한 경우로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법원의 건축 관련 감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재판부가 요구하는 공신력 있는 협회로 적절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회계 및 노무 관련

#퇴사 후 경고문구 #퇴직권고 후속조치 #법인전환, 포괄사업양수양도 #업무상 저작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추가 징수 #산재 · 노무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상벌규정제도 #영업기밀 보호 #권고사직

KEYWORD 퇴사 후 경고문구

01

퇴사한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해 노하우와 전략 등을 사용해 경고 문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역
서울

해당분야

환경디자인

사례경과

퇴사한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해 노하우와 전략을 담은 내용을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해 이에 대한 주의, 경고 문구의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의견

귀하의 당사 재직 중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는 2023년 [*]월 [*]일 당사를 퇴직하였고, 퇴사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당사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 서약서 참조).

1. 퇴직 후 회사에 재직 시 지득한 영업 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 또는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체에 누설, 유출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퇴직 후 회사의 영업 비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 본인은 재직기간 중 지득한 회사의 경영정보, 제품 및 기술정보, 진행 중인 프로젝트 기획,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디자인 제안서, 지적재산권, 사업 계획, 시장정보, 고객정보 및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수행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퇴직 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회사의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나 업체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하거나, 유포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과실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 공개되거나, 유포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본인이 근무기간 중 작업한 결과물은 회사의 기획 하에 진행한 업무상 저작물로, 그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본인은 이를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개인 포트 폴리오(출력용) 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및 영업의 목적 또는 상업적인 이유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라. 본인은 퇴직 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디자인 시안, 프로젝트 관련 자료, 기획서, 보고서, 노트, 메모,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 매체 등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귀하가 서약한 바와 같이, 귀하는 퇴직 시, 귀하가 관리하고 있던 디자인 시안, 프로젝트 관련 자료, 기획서, 보고서, 노트, 메모,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 매체 등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중 지득한 회사의 경영정보, 제품 및 기술정보, 진행 중인 프로젝트 기획,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디자인제안서, 지적재산권, 사업계획, 시장정보, 고객정보 및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수행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퇴직 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회사의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나 업체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하거나, 유포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특히 경쟁 공모에 있어 재직 중 지득한 회사의 경영정보, 제품 및 기술정보, 당사의 디자인제안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향후 귀하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바, 이점 유념하셔서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약서상에서 정한 준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KEYWORD 퇴직권고 후속조치

02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퇴직 권고 중 무단으로 본인 집기 등을 챙기고 퇴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퇴직 권고 중 무단으로 본인 집기 등을 들고 퇴사한 상황에 대해 후속 조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저조하여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퇴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짐을 챙겨서 나간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 및 법원은 업무능력 저하를 해고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해고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짐을 챙겨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로금 지급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KEYWORD 법인전환, 포괄사업양수양도

03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대출금과 진행 중인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어서 이를 법인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회계관련

자문의견

1. 개인사업자의 업력을 승계하여 법인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포괄사업 양도양수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방식을 제안합니다.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권리(자산)와 의무(부채) 뿐만 아니라 거래처 관계, 영업상의 비결 및 경영조직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영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출기관에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하고자 함을 고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도 전담기관에 수혜기업 명의변경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출은 통상 포괄 양수도 임을 증명하면 대출 승계가 허용되고,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기업 변경 여부는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므로 담당 기관에 필히 사전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경이 불가하면 지원 사업 종료 후에 법인전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법인전환 절차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법인설립(상호/사업목적/자본금 등 확정 후 법무사 의뢰)
   ② 사업양도양수계약(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계약)
   ③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④ 개인기업의 결산
   ⑤ 개인기업의 폐업 및 부가세 신고
   ⑥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예금, 차입금, 차량, 임대차계약 등)

KEYWORD 업무상 저작물

04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디자이너가 제작한 저작물은 창작자인 디자이너 개인의 소유인가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던 법인의 소유인가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디지털

사례경과

A 기업은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매년 수주를 받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사의 플랫폼에는 대표 캐릭터가 필요하여 웹툰작가와 용역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작가의 요청으로 구축 기간 동안 고용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릭터 제작은 22년도에 연말까지 순조롭게 제작되어 납품을 하게 되었고, 담당 작가는 퇴사 처리되어 고용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3년도 올해 신규로 이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 예정입니다.

현재, A사와 발주처는 저작물 활용동의서로 캐릭터를 발주처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와는 별도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인데, 향후 캐릭터 사용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9조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나오는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다면 위 상담자가 저작권자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 소유의 저작권으로 자유롭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EYWORD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추가 징수

05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게 된 대상 직원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환수조치를 받고있는데, 당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제품 디자인

사례경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게 된 대상 직원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환수조치를 받았습니다. 동 직원이 조사받을 당시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급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당사가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문의견

(수급요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0.12.1.에서 2021.12.31. 사이에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75만원을 3명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 장려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별첨 자료를 참고 하세요.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부정수급액 반환
사업주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나. 지급 제한
사업주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함.

다. 추가 징수
사업주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1)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수급금액의 5배
(2)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수급금액이 2배

라. 형사 처벌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동 직원이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장이 고의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될 것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각종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는 최초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것이 인정될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당시에는 장려금 지급을 받는 데 하자가 없었으나, 그 후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EYWORD 산재·노무

06

산재신청 관련 절차 및 관련 내용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노무

사례경과

- 1년 3개월 근무 직원의 산재처리 요구에 대한 대응 자문
- 택배 관련 업무 담당, 22년 11월부터 손목삼각 인대 염증 발생하여 2주 입원
- 물건의 무게가 15Kg 이상인 경우 이동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음

자문의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상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수술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이 확인될 경우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KEYWORD 육아휴직

07

육아휴직 복직 직원의 휴업 관련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노무

사례경과

당사는 직원 복지 관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예정인 직원에 대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에 무급휴직을 권고하고자 함, 이에 원만한 협의 방법에 대한 자문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매출이 급감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 등을 공감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급휴직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KEYWORD 근로기준법

08

인사·노무 관련 기본급, 연차, 근로계약서, 퇴직 정산 등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제품,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1.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미산입 식대를 고려한 기본급 설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22년 8월 입사하여 2023년 4월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한다는 전제로 올해 연·월차휴가 개수를 14개라고 공지하였습니다. 8월 1일이면 1년 만근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오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 2023년 발생 월차 3개, 사용 연차 5개인 상황입니다. 2개 초과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 시 법적인 문제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3. 신규 근로자 출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정확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4. 퇴직 정산(4대보험) 금액 계산 방법 혹은 Process를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금액 계산을 위하여) 또, 보통의 회사들은 퇴사 시 퇴직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일용근로자 정산 시>원천징수 세액[일급여-150,000원]* 2.7% 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급여로 계산하는 것인지 총금액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월 급여 일할 계산(계산법 2가지) 중 어떤 것이 좀 더 보편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1. 최저임금법 제6조 근거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2010580원) - 식대(월 최저임금액 1% 초과분 →18만 원가량)= 기본급 183만 원 가량 책정해도 무방합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 바, 추가 사용분은 근로자 동의하에 공제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법상 작성 시기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계약서 미작성 문제 삼을 시 벌금 내려질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 바로 작성을 권고 드립니다.
4. 퇴직 정산 관련 위 사업장은 고지 사업장으로 퇴사자 발생 시 공단 문의하여 정산분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방법이 정확한 금액 계산에 적합합니다.
5. 일용근로자는 일별 소득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처리는 근로자를 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탈법적 방법,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6. 월 급여 일할 계산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KEYWORD 상벌규정제도

09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상벌규정 제도의 개편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제품,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상벌규정 제도의 개편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현 직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구두상 정정요구가 아닌 서면 또는 데이터화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 영업비밀 및 핵심정보를 인지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외 추가적인 서류(영업비밀유지, 경업금지서류 등) 작성이 필요하고, 재직 중인 직원에게 연봉인상과 더불어 해당 서류의 추가 작성을 요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벌규정 제정은 사업주에게도 권한 행사 제한의 소지가 있는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 규정은 징계사유 명시, 징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EYWORD 영업기밀 보호

10

직원의 퇴직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채용 단계에서부터 영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최근 연구원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연차수당 청구 및 업무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으며, 퇴직 이후 구직 사이트에 회사와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용 단계(고용계약 체결 시)에서부터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발생한 악플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고용계약 시 영업 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 서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청인의 요청 사항과 같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누출 등'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질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입증하는 불편을 피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재부의 재량으로 감액될 수 있음)

구직 사이트 악플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위법성 유무 확인과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EYWORD 권고사직

11

직원의 업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역
강원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연봉을 동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유 : 본인의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해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하였으며, 평소 지각이 잦음. 다른 직원들과 소통 및 융화가 되지 않고 업무성과를 내지 못함. 경위서 및 면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였으나 변화되지 않음)

자문의견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수긍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해지에 해당)

주의할 점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대해 구두상 수긍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입증자료(사직서 등)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연봉을 동결하는 부분에 있어 단순히 사직 거부만을 이유로 연봉을 동결(인상하지 않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례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폰트도안 저작권법 #서체도안 #무료탬플릿, 무료이미지, 라이선스 #폰트, 강매 #공모전 #무료폰트, 트레이드 드레스 #폰트, 저작권

KEYWORD 폰트도안 저작권법

01

폰트 도안 사용이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나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인터넷 홈페이지 제호디자인 수정의뢰를 받았는데 폰트 도안의 사용이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폰트 도안은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독자적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이르지 않는 이상 저작물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폰트 파일로 "oooo.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신청인이 폰트 도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폰트 파일의 이용 없이 폰트 도안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EYWORD 서체도안

02

폰트 파일 결과물을 이미지화하여 납품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나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사례경과

A 기관 ○○○체를 활용해 디자인 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나, 폰트 파일 결과물을 이미지화하여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저작물을 납품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자문의견

신청인이 A 기관 ○○○체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도용, 변형하여 사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 의할 때 신청인은 ○○○체 서체 파일의 결과물을 이미지화하여 이를 디자인 저작물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서체 파일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 서체 도안을 살펴볼 때,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이르는 정도로까지는 볼 수 없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체 도안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EYWORD 무료탬플릿, 무료이미지, 라이선스

03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 무료 탬플릿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동일한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금액을 지급하라는데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상담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무료 디자인 편집사이트(미○○○○)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도 무료로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이며, 문제가 된 사진의 저작권자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업체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저작물의 사용금액을 지불하라, 또는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사안입니다.

자문의견

만약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저작권자이거나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통상 라이선스인 경우에는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미○○○○로부터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다른 업체가 단순한 통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작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것은 적절한 이행지체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행기 이후에도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행 독촉을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저작권자인 것처럼 금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KEYWORD 폰트, 강매

04

사이니지 제작에 있어 서체저작권업체에서 폰트 라이선스 구매에 대한 공문 접수한 상태로, 해당 서체 라이선스 1건에 대해 구매를 진행하고 싶으나, 폰트업체에서 보유한 전체 354종에 대한 통합구매를 제안, 1개 라이선스에 과도한 요금지불의 해결방법은?

지역
부산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디자인기업 A는 사이니지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사업 진행하였으며, 브랜드 개발을 위해 D○○○ 서체를 사용하였으며, 사업완료 시점에 L.I 최종파일을 발주처에 전달함. 서체(D○○○) 저작권을 소유한 기업에서 서체프로그램 및 판매관련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중인 대행사에서 2023년 2월 24일 저작권 침해관련 건으로 공문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대행사와 유선을 통해 D○○○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렸더니 D○○○ 354종에 대한 영구적 사용권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 당사는 D○○○ 1건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를 원한다 했더니, D○폰트 354종을 구매하는 것보다 1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당사는 1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길 원하나, D○폰트 354종 라이선스 보다 1건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 금액이 더 높다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문의견

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외주를 준 저작물에 대하여 만약 저작권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 위반의 책임은 어디에다가 지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제작은 위탁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해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폰트 실사용 금액으로 적절하게 협상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에 저작권 중재위원회가 있고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으로 전자로 조정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위 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KEYWORD 공모전

05

공모전에 디자인을 출품할 때 디자인에 사용된 특정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외부에서 공개된 기술이라면 공모전 수상 이력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공모전

사례경과

신청인은 공모전에 디자인을 출품할 때, 디자인에 사용된 특정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외부에서 공개된 기술이라면 공모전 수상 이력 취소 여부 문의와 디자인을 진행할 때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기존 특허 기술 사용해 디자인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특허와 디자인은 다른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디자인권, 상표, 저작권으로 구분되고 각각이 별개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것이며, 상표는 상품의 표장을 보호하고, 저작권은 창작물 자체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문의한 사항은, 디자인 출품 시 디자인권과 저작권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시각디자인 공모전이라면 문제 소지가 없고, 아울러 카피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소지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문의한 상업적 용도는, 폰트 저작권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작권법상 폰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폰트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용도 제한 라이선스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민법상 계약 위반으로 취급될 우려는 있습니다.

KEYWORD 무료폰트, 트레이드 드레스

06

인테리어 간판에 사용할 폰트를 제작하였는데, ○○○폰트를 기본 베이스로 변형 제작한 로고 폰트를 사용해도 될까요?

지역
광주

해당분야

폰트 디자인

사례경과

본점과 가맹 계약 체결 시 인테리어 간판의 로고 폰트를 ○○○폰트를 기본 베이스로 변형하여 제작한 로고타이프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트레이드 드레스'의 관점에서 확인받고자 합니다.

자문의견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제품,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외관, 디자인 색상, 그래픽, 패턴 등을 포함하는 시각적, 디자인적 요소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에 해당되어 민사 대상이 됩니다. ○○○폰트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무료폰트이고 이를 변형하여 제작한 로고타입 형태는 ○○○ 확인 결과 자체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 연구, 수정, 및 재배포가 허용된다고 하므로, ○○○ 폰트인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수정된 글씨체를 로고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트레이드 드레스의 관점에서는 본점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KEYWORD 폰트, 저작권

07

상업 폰트를 무료 폰트로 알고 글자를 깨서 인쇄물을 제작 의뢰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저작권

사례경과

지인의 의뢰를 받고 상업용 폰트를 깨서 인쇄물 제작을 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면 디자이너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자문의견

만일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결과물(문서, 동영상 등)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글자체를 보고 따라 쓰거나, 글자체가 포함된 내용을 캡처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글꼴 파일을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료 폰트라도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KEYWORD 폰트저작권

08

**유료 폰트를 구입하지 않고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폰트 저작권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대전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사례경과

유료 폰트를 구입하지 않고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폰트 저작권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폰트는 각 폰트마다 저작권 혹은 라이선스 범위가 존재하므로 각 폰트의 폰트 저작권, 라이선스를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유료 서체 자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폰트파일(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개인용으로는 무료이나 상업용으로는 유료인 폰트가 있을 수 있으니 유료 폰트의 경우에는 폰트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폰트의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니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을 검색하는 등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기타 및 특수사례 관련

#길거리조형물 저작권 #주거지, 부설연구소 설립 #담보권 설정
#최종성과물 미사용 #임대차 계약

KEYWORD 길거리조형물 저작권

01

길거리를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지역
서울

해당분야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사례경과

길거리를 찍은 출판물을 만들어 상업 판매하고 싶은데, 사용하는 사진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간판의 주인과 조형물 창작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는 편이 제일 안전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법리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길거리 간판이나 조형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이를 복제(사진촬영은 복제의 한 태양입니다.)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간판이나 조형물을 무단으로 사진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판물을 만든다면 이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또 하나의 취지가 공중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도 있으므로 무작정 저작권자의 권리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공중의 자유 이용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자유로운 자연경관이라든가 오래된 유물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저작권과 무관하지만 창작성이 있는 도안화된 간판이라든가 조형물은 저작자의 창작과 노력이 깃들어 있어 저작권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것은 제35조 제2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인지’가 판단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 경우에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림엽서, 캘린더 등의 제작을 위한 복제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으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후 촬영 및 게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KEYWORD 주거지, 부설연구소 설립

02

A 디자인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 전용 시설이긴 하지만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청만 하면 가능한가요?

지역
부산

해당분야

산업 디자인, 기업 설립

사례경과

현재 사무실을 주거 전용 시설을 임차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디자인 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자문의견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연구공간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는데 주거 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아파트의 경우 물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전용 건축물로서 업무용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KEYWORD 담보권 설정

03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각자의 역할로 자금을 출자하는 등의 업무를 할 때 발생하는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
부산

해당분야

종합 디자인

사례경과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각자의 역할로 자금을 출자하는 등 업무를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1. 계약서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계약은 계약서 등의 작성이 없어도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를 쓰거나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존재합니다.

2. 담보권 설정여부

지불 능력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설정을 위한 계약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 또는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므로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부모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약정 가능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3. 미변제시 할 수 있는 법적절차

공증을 받게 되면 소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만을 작성하였거나 구두계약을 한 경우에는 소 제기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EYWORD 최종성과물 미사용

04

A 재단과 BI 관련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성과물을 전달한 상황에서 내부 사정으로 재단이 BI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디자이너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지역
대구

해당분야

공모전

사례경과

이 사건 A 재단과 BI관련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에 양도된 상황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재단이 BI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왜 명칭이 변경되었고, 디자인한 BI를 사용하지 않느냐며 재단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BI를 사용하여야만 하는지, 디자이너가 재단에 최종 성과물인 BI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재단이 최종 성과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양도를 최종적으로 받았다면, 최종 성과물인 위 BI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재단이 결정할 것이지 디자이너가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같은 이유로 디자이너가 재단에 BI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디자이너로서는 본인이 디자인한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을 수 있을 것이고, 최종 성과물이 양도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재단에 질의를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디자이너와 해당 사안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EYWORD 임대차 계약

05

법인으로 디자인 사무공간 임차 후 사용자에게 공간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안전사고 예방 및 법적인 공증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
광주

해당분야

계약관련

사례경과

법인으로 공간을 임차한 후 사용자에게 '1인 헬스장' 공간 대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안전사고 등 법적인 문제 및 공증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공간 대여는 법적으로 전대차에 해당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에 대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인 헬스장은 체육시설 단련장업 허가나 체육지도사의 배치 의무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저촉 요소는 없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이나 기기의 하자가 있다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인허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행정기관의 확인 내용은 공증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지식재산권 관련

01 로고 디자인을 무단 도용당하여 연락했지만, 사과도 없이 판매중지를 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018

02 디자인 도용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019

03 인스타툰 연재 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020

04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제품의 카피 품목을 타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021

05 A업체는 내부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에 타 업체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출원 중인 상태로, 아직 등록된 상품이 아닌 걸로 확인되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022

06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타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을 예정인데, 상표권 이전시 주의사항은? 023

07 로고를 비슷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024

08 상표권의 효력 범위와 레시피와 같은 기술 형태가 아닌 저작권의 특허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5

09 공모전 당선 후 시행사에서 저작권 양도 요청이 왔는데 위와 같은 요청이 정당한가요? 026

10 기존에 식별력이 있는 로고를 첨부하여 상표 출원을 하였고, 이후 최종 로고가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표 출원을 재진행 해야 하는지 또는 해당 출원일자로 로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027

11 유사한 포터블 방식을 가진 스크린을 디자인하였을 때 해당 기업에서 소송을 걸지 않을 정도의 허용범위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28

12 개인 CMF 소재(호두껍질, 송진, 카나우바 왁스 등)를 적정 비율을 통해 도출한 소재를 통해 식기류를 통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타인이 동일 소재의 식기가 아닌 다른 것을 제작할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029

13 개인 작업 계정에 있는 작업물을 타 계정에서 거의 유사하게 업로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이 있나요? 030

14 2008년 개업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 내 있는 다른 업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상표권 재신청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031

15 디자인 작업물에서 아이디어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어나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032

16 개인이 제작한 바인더를 교육용으로 배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는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033

17 전기차 배터리 실시간 진단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확정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 034

18 싱크대의 유분을 걸러주는 제품을 개발했는데,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035

19 당사가 개발한 카페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가능할까요? 036

20 배관 파이프와 배수구 연결을 도와주는 고무금형 개발에 따라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037

21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S2B학교장터(공공기관 우선 구매몰)에서 동의 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및 구제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직업체험 색칠키트 / 다문화체험 색칠키트) 038

22 한옥 리모델링 과정 중 한국의 오래된 벽지를 재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문의합니다. 039

23 자사 제품에 대한 카피제품 유통 업체에 대한 경고장 작성을 문의합니다. 040

24 신규 제품 론칭 후 브랜드 아트워크 변형 판매로 인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41

25 ESG 경영 사례집 출판을 할 경우, 대형 글로벌 회사의 보고서를 번역 · 편집해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를 문의합니다. 042

26 과학정보통신부 과학상품 선정에 따른 제품 디자인(황○○○)에 대한 디자인 특허 출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043

27 경쟁회사 상표권 침해 요소에 따른 자문입니다. 044

28 공모전에 출품한 교육콘텐츠에 대해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공지사실을 통해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045

29 졸업작품 '킥보드 주차 벤치'의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출원 관련 자문입니다. 046

30 해외 수출용 상품의 단상자 및 튜브 디자인 중 일부를 무료 상업용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047

31 해외 수출과 상품 보호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상표)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지원책이 궁금합니다. 048

32 디자인 특허와 상표 특허의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050

33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에 디자인 업체 직원들 이름을 같이 등록하는 것과 그에 대한 권리 주장 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052

34 카피캣, 모방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054

35 미국 상표권 등록 후 상표권 양도를 위한 양도대금 지불 및 상표권 효력, 유지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056

36 중소기업에 특허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운용 우수사례 또는 운용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057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지식재산권 관련

37 공유마당 저작물 출처를 표기 후 개발 완료된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상표 출원 또는 디자인 출원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058

38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웹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브랜드 로고, 슬로건,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해 무단 도용이나 2차 제작물 생산, 상업적 복사 및 배포를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059

39 공모전 수상작으로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제품이 실용신안이 가능한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060

40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금액 책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062

41 지역 관광지 랜드마크를 도안화(일러스트)하여 제품에 프린트하여 판매할 경우,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 063

42 유아용품(제품 디자인) 출시할 경우, 모방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064

43 픽셀아트를 활용한 캐릭터 블록 상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065

44 자사의 디자인 모티브와 유사한 디자인 상품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066

45 디자인 업체에 제작물을 의뢰할 경우, 결과물 ai 원본 파일을 받아 디자인 수정 또는 가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67

46 TV 프로그램(생○○○○)에 출연한 가게에서 판매하는 제품 포장에 프로그램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068

47 개발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69

48 자체적으로 디자인 출원 신청 후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70

49 심볼이 들어간 로고의 등록 방법이 무엇일까요? 071

50 기존의 출원 디자인, 특허를 업그레이드 가능할까요? 072

51 의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효용이 있을까요? 073

52 신규 제작 브랜드 상표권 출원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074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계약 관련

01 계약서 없이 디자인 용역을 진행하다 작업 중단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78

02 선정되지 않은 디자인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까요? 079

03 콜라보로 개발하는 디자인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적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080

04 신청인 A사와 협력사인 B사는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진행하였고, 최종 개발 예정 3가지 툴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교육프로그램(△△) 이름의 사용 강제 여부, 독점계약 관련 등 어떻게 소유권을 나눠야 할까요? 081

05 사전 계약서 없이 소액 단발성으로 디자인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원본 파일 요청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082

06 구두 용역으로 진행한 일러스트 결과물을 다른 디자이너가 ppt로 제작하여 본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시 제재 및 책임의 소지는 있나요? 083

07 디자인 용역 진행 중 계약 외 업무 요구 및 디자인 원본 사용, 수정 가공 사용 등에 대하여 디자인 권리와 업무 강도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84

08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 미지급 건에 대한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도움 요청드립니다. 085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디자인 용역비 관련

01 지인과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선급금 외의 용역비를 미지급 받아 이에 대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088

02 계약서 없는 프로젝트 파기 시 요청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시안비의 수준과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089

03 프리랜서 계약 근무자의 경우 밀린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090

04 전 계약서에 의거해 진행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디자인 제작 용역에 대한 개발비 미납 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091

05 디자인 용역비에 대한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092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회계 및 노무 관련

01 퇴사한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해 노하우와 전략 등을 사용해 경고 문구를 보내고 싶습니다. 096

02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퇴직 권고 중 무단으로 본인 집기 등을 챙기고 퇴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097

03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금과 진행 중인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어서 이를 법인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98

04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디자이너가 제작한 저작물은 창작자인 디자이너 개인의 소유인가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던 법인의 소유인가요? 099

05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게 된 대상 직원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환수조치를 받고있는데, 당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100

06 산재신청 관련 절차 및 관련 내용 문의합니다. 101

07 육아휴직 복직 직원의 휴업 관련 문의합니다. 102

08 인사·노무 관련 기본급, 연차, 근로계약서, 퇴직 정산 등 궁금합니다. 103

09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상벌규정 제도의 개편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104

10 직원의 퇴직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채용 단계에서부터 영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105

11 직원의 업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06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1 폰트 도안 사용이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나요? 110

02 폰트 파일 결과물을 이미지화하여 납품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나요? 111

03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 무료 탬플릿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동일한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금액을 지급하라는데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112

04 사이니지 제작에 있어 서체저작권업체에서 폰트 라이선스 구매에 대한 공문 접수한 상태로, 해당 서체 라이선스 1건에 대해 구매를 진행하고 싶으나, 폰트업체에서 보유한 전체 354종에 대한 통합구매를 제안, 1개 라이선스에 과도한 요금지불의 해결방법은? 113

05 공모전에 디자인을 출품할 때 디자인에 사용된 특정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외부에서 공개된 기술이라면 공모전 수상 이력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114

06 인테리어 간판에 사용할 폰트를 제작하였는데, ○○○폰트를 기본 베이스로 변형 제작한 로고 폰트를 사용해도 될까요? 115

07 상업 폰트를 무료 폰트로 알고 글자를 깨서 인쇄물을 제작 의뢰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116

08 유료 폰트를 구입하지 않고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17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기타 및 특수사례 관련

01 길거리를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120

02 A 디자인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전용 시설이긴 하지만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청만 하면 가능한가요? 121

03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각자의 역할로 자금을 출자하는 등의 업무를 할 때 발생하는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22

04 A 재단과 BI 관련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성과물을 전달한 상황에서 내부 사정으로 재단이 BI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디자이너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123

05 법인으로 디자인 사무공간 임차 후 사용자에게 공간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안전사고 예방 및 법적인 공증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124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4, 2177 (소관부서: 산업육성실)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IDP All rights reserved